

사단법인 한국배수성아스팔트기술협회 정관

2021.03.2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배수성아스팔트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Porous Asphalt Technology Association”로, 약칭은 “KAP T”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배수성아스팔트포장의 기술발전, 보급, 개발을 촉진하여 배수성아스팔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배수성아스팔트포장기술 품질을 높이고 내구성과 공용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로사용자의 편익과 공공복지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33-1 현대지식산업센터 A5-015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배수성(저소음)아스팔트의 혼합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회원사 기술보급사업
- ② 배수성(저소음)아스팔트에 대한 플랜트 생산운영기술 및 보급사업
- ③ 관련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위탁사무 및 증명서 발급
- ④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업
- ⑤ 배수성 포장발전을 위한 장기성능조사와 관련된 기술협조 및 기술제안
- ⑥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및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0인~3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0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0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0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1조의 1 (회원의 결의권)

-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0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